

< 2019년 서울7급 지방자치론 추가채용 >

1.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 수행에 적합
-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 ③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정답] ③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한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장점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정답]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되기 어렵다.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정답] ④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자치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부여되어 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 기업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 기업으로 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① 지방공사를 설립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6.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 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 이다.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정답]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③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G. Langrod)이다.
- ②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을 말한다.
-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답]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G. Langrod)이다. 즉 긴밀관계 부정설은 대륙형의 지방자치제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랭그로드(G. Langrod)가 대표적 학자이다.

8.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 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

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답] ② 일본은 199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③ 영국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프랑스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프랑스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강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9.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 위험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정답]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은 서울특별시장의 행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의 행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다.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행한다.

15.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의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6.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세율로 한다.
-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 하는 세율로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9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ㄹ.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ㅁ.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보기의 사례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

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18.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 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 된다.
-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레짐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이 사안에 따른 이합집산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20.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 교부세 재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교부하여야 한다.

㉠ ㉡ ㉢ ㉣

① 1천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50 전액

② 1만분의 1,924 조례 100분의 50 일부

③ 1만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40 전액

④ 1천분의 1,924 조례 100분의 40 일부

[정답] ③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 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 12. 23.>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u>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u>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
--

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